

신과학기술행정체제와 지적재산권 전략

일본 고이즈미 내각 7개 분야 혁신전략 수립내용을 중심으로

매일경제신문사

김완묵 차장(kwm@mk.co.kr)

일본 고이즈미 내각은 2002년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을 선언한 이후 2010년 세계 제1의 지적재산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워 두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다. 2002년 7월에 '지적재산전략대강'을 마련한데 이어 그해 11월에는 '지적재산기본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설치되고 대학, 교육, 기업, 행정, 외교, 입법, 사법 등 7개 분야에서 지적재산 혁신전략이 수립됐다. 우리 정부가 과학기술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창조적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겠다는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제조업과 첨단기술을 아우르고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과학기술 강국을 지향하는 반면 일본은 한단계 나아가 과학기술개발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통한 지적재산대국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세계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

일본은 1867년 메이지 유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두번에 걸친 개혁작업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첫번째는 메이지 유신에 의한 탈아시아 전략을 통한 선진제국의 진입이다. 아시아에서 벗어나 선진 구미제국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구미 열강의 시스템과 기술을 도입하고 교사를 초빙하거나 유학생을 파견해 이들의 발전된 과학기술과 철학을 도입해 시스템을 개혁했다. 두번째는 1945년 패전 이후 부흥정책이다. 선진 제국이 연구개발한 기초기술을 개량·발전시키는 형태로 이들 국가를 단숨에 따라잡는데 성공했다. 섬유 등의 경공업에서 금속·조선·자동차·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싸고 질높은 노동력에 고품질·고기능의 품질을 접목해 장기간의 호황을 구가했다.

하지만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오랜 침체에 시달리고 있다. 선진국이 고생해 개발한 기초기술을 값싸게 무임승차하는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 지난 1995년에는 이런 자성론에 근거해 창조적 과학입국을 겨냥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창조적 지적재산을 통해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지적재산입국을 향한 제도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창조적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의 서울대학교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지적재산 소득은 고작 3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의 컬럼비아대학은 1억1600만달러(1300억원)를 벌어들여 큰 격차를 드러냈다. 지적재산의 산실(産室)이어야 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소리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강국을 넘어 창조적인 지적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경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새롭게 출범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중요한 업무영역으로 추진해야하는 영역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제시된 혁신본부의 중점추진 영역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전략들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원고는 우리나라 현재의 특허제도의 문제점이나 대안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전략을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정책의 나아갈 바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적재산권은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최근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과 그 대안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고 본다. 특히 업무의 영역상 특허행정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특허청의 한계를 벗어나 범정부, 범부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여러 전략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혁신본부가 향후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심을 확대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1. 일본 지적재산전략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전략은 크게 대학을 지적재산의 산실로서 개혁하는 방안과 지적재산권 창출과 관련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 기업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이 수익의 창출근원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방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과 외교전략, 입법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각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지적재산 산실로서 대학개혁 추진

대학이 지적재산의 산실로서 자리잡아야 하는 이유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적재산권의 수준이 개량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기초기술에 기반하여 불확실성이 큰 원천특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야는 기업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창출에 있어서 일본정부는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대학내 연구자들이 지적재산권을 창출하는데 적합한 여러 제반여건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다.

① 지적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환경 정비

현재 대학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적고 연구자가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발명이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대학 연구의 연구환경을 정비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즉, 대학연구자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연구분위기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연구자가 다른 나라로 떠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에 우수한 연구자를 끌어 모

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② 특허를 대학교수의 평가기준으로 도입

미국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특허문헌의 중요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일본정부는 발명에 관련되는 기존의 문헌을 반드시 인용해 기재할 의무가 있는 '선행기술 개시의무'를 엄격히 지키도록 특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대학교수의 평가항목으로 학술논문, 학생으로부터 평가와 함께 특허실적을 평가지표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③ 특허출원 관련 비용 및 지적권 소송비용을 연구개발 예산에 포함

대학 및 연구소에 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에 특허출원 관련 비용 및 지적재산권 소송비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관련 비용에는 국내 출원과 외국출원, 그리고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한 예산까지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다.

④ 대학내 TLO(기술이전기관)에 관한 세제개선

현재 일본 대학내 TLO가 특허권을 발명자로부터 양수받는 경우 특허출원료, 변리사보수 등의 특허비용을 특허권으로서 자산계상해 8년간 상각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익과 세 부담이 발생해 TLO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되어 대안으로서는 TLO가 특허관련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시의 손금으로서 처리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대학이 라이선스 수익을 거둘 경우에는 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 특허로 인해 수입기와 세금기의 차이가 나 일시적으로 세금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도 발명자에게 라이선스를 지불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사무의 번거로움을 경감하기 위해 원천징수를 폐지하는 대신 일률적으로 10% 과세하도록 개정하는 안도 제안하고 있다.

⑤ 대학내 TLO 운영의 자율화

TLO가 기술이전 기능을 제대로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 특허를 소유할 수 있는 독립법인으로 할 필요가 있다. TLO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을 가장 적절한 기업을 찾는 것인데, 이를 위해 시장 및 기업에 대해 잘 이해하고 특허 및 계약실무에 능통해 있는 인재를 기용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TLO는 대학의 다른 부문과의 인사이동에서 독립해 운영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⑥ 학내발표에 대해 특허의 신규성 예외 인정

현행의 일본 제도는 연구자 본인이 학내논문(석사·박사 논문도 포함)을 발표해 공지하는 경우 연구자 본인이 특허출원해도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서 거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를 인용하여 연구자 본인에 의한 학내 발표는 거절사유에 포함하지 않거나 논문 발표 등을 간단히 처리해 특허출원할 수 있는 가출원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⑦ 권리양도를 위한 규칙 확립

연구자가 대학에 권리를 양도 또한 라이선스할 때의 규칙을 확립할 필요도 제기하고 있다. 규칙의 내용은 특허출원료 및 기술이전에 관한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양도대가 등을 정한다거나 대학간 연구자 획득경쟁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여러 대학을 타진해 넘겨주고 싶은 대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학부생, 대학원생, 포스닥에 의한 발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일본 대학에서 이제까지 실제 발명자임에도 불구하고 학부생, 대학원생, 포스닥은 특허의 출원서류에 발명자로서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울러 허위로 게재하는 경우 제재규정을 둘 필요도 제기하였다.

⑧ 연구재료 및 저작권·노하우 등 연구성과물에 대한 보호 강화

연구재료는 연구개발의 결과 생겨나는 유전자전환 마우스 및 DNA, 시작품, 리서치툴, 재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지적재산으로서 특허와 함께 중요시된다. 따라서 일본 지재권 전략에서는 이들 연구재료에 대해서도 지적재산으로서 취급을 명확히 해 특허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연구성과물로 특허뿐만 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산업저작권', 유전자분리 방법과 같은 매뉴얼 및 물질의 분석방법 프로그램 등 기업으로부터 수요가 높은 연구성과도 동시에 나오는데, 이들을 저작물, 노하우 등의 지적재산의 관점에서부터 종합적으로 보호·활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⑨ 이공계 학생 전원에게 지적재산 강습 실시

이공계 학생들에게 특허제도의 의의, 연구실험 노트를 만드는 방법, 특허정보의 검색 방법, 특허명세서의 작성방법, 특허출원의 방법에 관해 가능한 일찍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학에 지재학을 도입하여 지적재산의 사회적 가치, 경제학적 분석 및 기업전략 등 경영학적인 접근을 도입하고, 대학에서 양산된 포스닥을 심사관, 심판관, 조사관으로서 채용해 지적재산권 비즈니스를 지닌 인재로 양성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지적재산권을 창출하는 인재육성

① 오리지널리티(창조성)를 존중하는 지적재산교육 실시

스스로 지적재산을 창출한 학생을 높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창조적인 인재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때부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혹은 오리지널리티를 존중하는 교육과 스스로 지적재산을 창출하는 일을 높게 평가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② 발명가 체험프로그램 실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방학때 과제로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 특허청의 검색시스템을 통해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특허명세서 작성과 도면을 그려보는 작업을 체험해 보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되었다. 또한 교사들에게 지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외부의 지적재산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해 지재교육을 강화한다.

3) 기업수익의 근원으로서 지적재산권 강화

지적재산권이 기업 내에서 전략적으로 이용되고 더 나아가 기업수익 창출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위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① 지적재산이 기업경영의 축

21세기 기업경영에서는 지적재산포트폴리오 구축 등 지적재산전략 자체가 경영의 핵심으로 요구되고 있다. 무형자산을 정당하게 평가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기업경영의 필수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재보고서 및 지재회계를 도입될 수 있다.

지재회계제도에 의해 주주의 경영감시가 가능해져 기업은 외부로부터 기술도입 및 기술수출 전략을 유효하게 입안해 필요없는 특허출원을 없애고 가치가 없는 불량채권 상태의 특허를 취소하는 등의 효율적인 지재관리를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적재산 책임자(CIPO-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를 임원으로 승격시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경영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② 지재회계 도입 및 지재보고서 발표

지적재산권이 기업수익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 손익계산서에 특허 및 상표 등의 출원비용, 유지비용, 기업 브랜드 유지비용 등의 지출항목과 로열티 수입 항목 등의 수입항목을 가능한 상세히 기술한 지재회계를 도입방안도 가능하다. 지재회계의 발표에 의해 지재에서 이익을 내는 습관을 체질화할 수 있게 되며, 아울러 기업은 출원건수, 공개된 출원내용, 특허권 거절율, 심판청구건수, 보유특허건수, 특허실시건수, 이전특허건수 등의 사실을 기업경영 정보공개의 하나로써 유가증권보고서 등에 기재해 주주총회 등에서 공개하는 것이다.

③ 기술정보를 엄격히 관리

기업들은 사내의 관리체제를 정비해 기술정보의 관리를 엄격히 하고 연구개발부문에서는 연구실험노트의 기록을 의무화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특허출원시 데이터가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한 개라도 허위가 있다면 소송과정에서 허위개시로서 인정돼 권리

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이디어 단계에서 출원하는 경우 추측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아 특허소송 과정에서 패소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④ 외국출원 증대와 출원비용 지원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외국에 대한 전략적 출원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에 대한 출원과 외국에 대한 출원이 크게 차이가 나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외국출원을 늘리는 것이 중점사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의 특허·상표의 취득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출원을 포기하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연구자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 이것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출원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⑤ 지재 비즈니스산업의 진흥

지적재산이 재산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매매업무만이 아니고 특허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서비스, 지재를 보유한 벤처기업에 리스크머니의 공급, 지재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특허료의 징수서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확대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분야에서 자유경쟁을 확대하고 장애가 되는 규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지재비즈니스를 부흥시킬 수 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특허정보, 저작권정보, 기업독자의 공개기술정보, 논문정보, 의약품부작용정보 등의 모든 지재정보가 링크돼 검색이 가능하도록 세계특허정보 제공 서비스산업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및 연구자, 제조업 등 직접적으로 특허를 산출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사법, 의료,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지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

4) 지적재산 창출을 지원하는 행정

지적재산 창출을 지원하는 일본정부의 지재권 행정전략은 한마디로 보다 빠르게 보다 폭넓은 사람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① 특허청의 전자도서관의 서비스 향상

전국 어디서나 특허정보를 쉽고 간단하며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본 특허청의 특허전자도서관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검색 스피드도 향상시키며 인쇄 등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② 출원심사기간 단축

일본정부는 특허 심사의 스피드와 질을 동시에 높이는 행정개혁을 위해서 현재 출원공개를 1년 6개월 후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6개월~1년으로 당길 필요를 제기하고 있으며, 심

사 및 심판기간은 1년이내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심사보조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심사보조원의 확대는 포스닥이나 연구소의 연구자를 심사관으로 채용해 연구자들에게 지재권에 관한 지식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선행기술의 공개 의무화

발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전제기술 및 관련기술 등의 선행기술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명세서에 발명자가 인식하고 있는 선행기술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해 발명의 신속한 이해와 특허의 권리범위의 인정 및 보호범위의 측정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개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재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④ 멀티미디어 특허출원도 가능하게

출원명세서를 현재 문자나 도면만을 활용하기 보다는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비디오, 인터넷 등의 멀티미디어 기술을 가미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서면으로 이해하기 힘든 바이오기술, 비즈니스모델 등에 멀티미디어를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일본의 지재권익을 지키는 외교전략 추진

일본정부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전략은 국제적인 모니터링의 강화와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① 위조제품 방치국가에 대한 감시 및 제재

일본기업의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상품의 제조 및 수출이 중국 및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이런 위법행위를 방치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할 필요성과 통상법을 최대한 활용해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국제무역위원회의 신설

특허권 등 침해상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 경찰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을 벤치마킹한 국제무역위원회를 신설해 공정무역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모방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입금지조치를 발동하는 대안이 모색 중이다.

③ 세계특허조약을 추진

현행 세계 각국에 개별적으로 지재권을 출원해야 하는 특허제도를 대신하여 하나의 출원으로서 세계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세계특허조약 체결도 모색 중이다. 또 특허권과 문학[^]예술의 권리보호에 관한 기본이념을 반영한 세계 지적재산헌장을 제정하도록 힘쓰겠다

고 천명하고 있다.

6) 지재관련 입법전략 추진

① 지재국가전략회의위원회 창설

일본정부내에서 지재국가 실현을 향한 국가전략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실현·사후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에 '지적재산권국가전략회의'나 국회에 '지적재산권국가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법 및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지적재산권 관련 기능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반성에서 기인한 것인데, 예를 들어 게임산업의 경우 프로그램, 화면표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돼 일본 문화청이 관리하고, 기능 등의 아이디어는 특허법으로 보호돼 일본 특허청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지재법 제정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지재관련법을 융합시키는 동시에 인터넷시대에 어울리는 지재법을 만든다는 방안이다. 먼저 지재권의 보호대상을 넓혀 물건으로부터 정보, 서비스로 넓혀야 하며, 저작권에 대해 저작자, 창작자가 충분히 보호되도록 개정해야 하고, 지재국가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침투시키기 위해 헌법에 지재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헌법제정시부터 지적재산의 보호, 육성을 명기해 국가의 시책으로 삼고 있다.

③ 3배 배상제도 및 정보절도죄 신설

과실로 무단사용한 경우와 구별하기 위해 지적재산을 고의로 침해, 부정이용한 경우에는 민사제재로서 3배 배상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적재산을 훔쳤을(침해한) 경우 5년이하, 저작권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현재 법규를 강화하여 절도죄와 같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비밀의 부정한 누설에 대해 민사상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금지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형사상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형사법에서도 지적재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96년 정보절도를 포함한 넓은 범위의 가치있는 비밀정보(Trade Scerete)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법을 정비한바 있다.

7) 지재소송의 전문화 신속화

① 지적재산 재판소 창설 및 지재 로스쿨 조기 설립

지재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뿐만 아니라 지재권 전부를 전문으로 다루는 재판소를 지방재판소 및 고등재판소 레벨에서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재소송은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신뢰감이 떨어지

기 때문에 기술적 소양을 지닌 재판관을 선발해 합의체로 운영하는 '지적재산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적재판소의 구성은 법적 소양을 지닌 재판관, 기술적 소양을 지닌 재판관, 쌍방의 소양을 겸한 재판관 각 3분의 1로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법과대학원(로스쿨)을 조기에 설립해 넓은 분야에서 실력을 지닌 인재를 등용해 지적권 전문 법률가로 키우는 방안도 제기되었다.

② 재판이외의 분쟁해결수단을 강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조정, 중재, 상담, 알선 등 재판 이외의 방법,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ADR을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집행력의 부여 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③ 특허침해소송의 중복을 방지 및 지적재판기간의 상한 규정

지재의 침해소송이 재판소에 제기되면 피고기업은 대항수단으로서 특허무효 심판을 특허청에 제기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절차를 한번에 끝내는 절차가 요구되고 이를 위한 법률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 지재소송의 평균재판기간은 21.6개월인데, 기간이 너무 길어서 판결이 나올 때쯤이면 기술은 진부화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통상 1년 이내에 결론을 도출한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재판기간의 상한을 최장 1년으로 하고 있다.

2.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지적재산 전략의 필요성

지금까지 일본정부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전략을 살펴보았다. 세계 4위의 지적재산권 출원의 위상을 가지는 우리나라도 2004년도 특허청을 중심으로 '21세기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특허행정의 7대 목표와 40대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허행정의 핵심적인 7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기술은 신속히 권리화하고 그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특허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특허심사 역량 및 특허심판 기능의 전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상표·디자인의 권리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기술이전을 촉진한다는 것으로, 특허기술이 경제적 부가가치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대학이나 특허거래의 활성화를 담고 있다. 이는 산업 정책이나 다른 정책의 영역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넷째,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이나 여성, 청소년 등의 지적재산권 창출활동을 독려하고 연구자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특허행정 정보화 및 특허정보의 이용을 확산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허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활용하는 방안과 특허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양성, 서비스시장 육성 등을 담고 있

다. 그러나 이 또한 많은 영역은 특허청의 업무영역이라기 보다는 범부처적인 노력과 협의가 있어야 가능한 영역이라고 하겠다.

여섯째, 지식재산 국제협력 및 통상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지식재산분야의 국제활동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일곱째, 특허행정의 내부혁신 역량 강화로, 범정부적 지식재산 전략수립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일본의 전략과 우리나라 특허청의 비전은 일정정도 유사한 전략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세부내용을 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본적인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일본의 여러 전략들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과제들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특허청의 비전은 이러한 범정부차원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고 지식재산권의 위상제고를 하나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국가 경쟁력이나 부의 창출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향후 더욱 증대될 것이 자명하다.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미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부의 창출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활용하는 수준은 그 중요성에 비해 너무나 미미한 편이며, 이는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내용에서 지식재산권이 다루어지는 내용과 위상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차원,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며, 이는 새롭게 출범한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권 전략은 법, 교육제도 등과 연계되며 제반 기술혁신정책들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앞에서 제시한 일본의 사례는 주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라 본다.